제25-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

2025년도 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회의일시 : 2025. 9. 8.(월) 10:30 ~ 15:40

☐ 회의장소 : 스파크플러스 삼성2호점 406호

☐ 심의결과

1. 규칙개정안건
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결
14건	13건	-	1건	-

2. 일반의결안건 · 보고안건

일반의결안건					보고안건	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 결	안건수	원안 접수
-	-	-	-	-	4건	4건

붙 임 : 1.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2. 일반의결·보고사항 결과

2025. 9. 8.

위원장	한국전력거래소	김홍근	
위 원	한국전력거래소	옥기열	
	산업통상자원부	김양지	(대 참)
	단국대학교	조홍종	
	건국대학교	노재형	
	법무법인 광장	조영재	
	한국전력공사	오흥복	(대 참)
	한국남부발전	서성재	
	포스코인터내셔널	김권종	
간 사	한국전력거래소	안병진	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【붙임 1】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실시간 계통전압 및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1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한국전력공사, 전력거래소(송전운영팀)
제안내용	1 **(산불고장 복구)** 전력설비 안정성을 고려한 **강행송전 절차 신설** ○ 고장 발생 후 30분 경과시 1차 강행송전을 시행하며 고장 재발생시 현장 여건과 전력설비 건전성 확인 후 2차 시행 2 **(선로개방 방법)** 현장과 전력시장운영규칙 **급전지시 사항 정합성 확보** ○ 전력설비 고장예방과 기기조작 명확화를 위해 선로 개방시 차단기 및 단로기를 개방, 단, 계통운영상 예외 조건을 두어 유연성 확보 3 **(조상설비 운영)** 전압제어 자원으로 **발전고객 조상설비 추가** ○ 공용송전망 전압변동을 최소화하고 신뢰도 기준전압 허용범위를 유지하도록 발전고객 조상설비를 급전지시로 가감 운영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**김 홍 근**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비중앙급전발전기 운전원에 대한 계통운영 교육 확대 적용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2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전력거래소(수급운영팀)
제안내용	□ **(교육대상 확대적용)** 계통운전 담당자 교육대상에 **비중앙급전발전기 운전원 포함** ○ **(교육대상)** 실제 설비를 운전하는 비중앙급전발전기 운전원 ○ **(연간 교육대상 인원 수)** 근무인원의 최소 1인 이상 ○ **(교육 이수시간)** 연간 2시간 이상 ○ **(교육과정)** 전력거래소가 시행하는 계통운영 과정으로 한정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**김 홍 근**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1차연료 변경 통지 기한 변경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3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울산GPS

제안내용

☐ **1차연료변경 통지기한 단축**

○ (기존) 실근무일 3일 전까지 서면통지

○ (개정) 해당 거래일에 대한 입찰일 1영업일 전 11시까지 서면통지

기 존	개 정
제2장 가격결정 **제2.1.1.2조(자료의 제출)** ⑥ 제2항 제1호 가목의 1차연료가 2개 이상인 발전기의 경우 사용연료 변경시는 발전사업자는 실근무일 기준 3일전까지 이를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. **[별표4] 입찰운영절차** 6.3.1.3 두 가지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는 발전계획수립기간의 발전기 운전형태를 한 가지 연료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,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또한 사용연료를 변경할 때에는 입찰서에 2차연료사용 또는 1차연료변경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. 특히, 1차연료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실근무일 기준 3일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서면통지하여야 하며, 일일 입찰시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.	**제2장 가격결정** **제2.1.1.2조(자료의 제출)** ⑥ 제2항 제1호 가목의 1차연료가 2개 이상인 발전기의 경우 사용연료 변경시는 발전사업자는 해당 거래일에 대한 입찰일 1영업일 전 11시까지 이를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. **[별표4] 입찰운영절차** 6.3.1.3 두 가지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는 발전계획수립기간의 발전기 운전형태를 한 가지 연료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,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또한 사용연료를 변경할 때에는 입찰서에 2차연료사용 또는 1차연료변경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. 특히, 1차연료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해당 거래일에 대한 입찰일 1영업일 전 11시까지 전력거래소에 서면통지하여야 하며, 일일 입찰시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.

주요 토의내용

☐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

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김 홍 근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석탄화력 미분기 동작특성을 반영한 출력증가율·감소율 현실화 관련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4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전력거래소(계통개발팀)

제안내용

□ **석탄화력발전기 미분기 동작특성(지연시간) 반영**

○ 석탄화력의 **미분기 동작특성을 고려한 출력증가율, 출력감소율을 하루전발전계획에 적용 등**

기 존	개 정
제2장 가격결정 **제2.1.1.1조(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운전비용 등 자료 제출 및 심사)** (생략) 3) 출력증가율 <신 설> 4) 출력감소율 <신 설>	**제2장 가격결정** **제2.1.1.1조(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운전비용 등 자료 제출 및 심사)** (생략) 3) 출력증가율 (미분기를 사용하는 석탄발전기의 경우 미분기 동작 특성을 고려한 출력증가율) 4) 출력감소율 (미분기를 사용하는 석탄발전기의 경우 미분기 동작 특성을 고려한 출력감소율)

주요 토의내용

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

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김 홍 근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설비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의 하루전발전계획 확대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5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전력거래소(시장운영팀)

제안내용

1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시 전력설비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 확대 반영

○ **(기존)** 10일 이상 휴전 반영 → **(개정)** 2일 이상 휴전 반영

기 존	개 정
[별표9] 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절차 7.1.6 송전제약의 검토 <중 략> ③ 전력설비의 휴전, 고장 등 적용시간대가 유동적인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. 단, 긴급휴전을 제외한 10일 이상 전력설비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한다.	**[별표9] 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절차** 7.1.6 송전제약의 검토 <중 략> ③ 전력설비의 고장에 의한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,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휴전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만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한다. 단 긴급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

2 발전계획별 수립 및 계통제약 반영기준 수정

○ **(기존)** 10일 이상 휴전 반영 → **(개정)** 2일 이상 휴전 반영

주요 토의내용

☐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

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– 단, 별표9 7.1.6 제3항의 문구를 아래와 같이 보완함

* (기존) (...)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휴전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만 (...)
→ (수정) (...)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휴전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(...)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김 홍 근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설비 휴전에 따른 송전제약 시 계통제약보정정산금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6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인천종합에너지

제안내용

□ **"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"의 휴전제약**으로 운전하는 **저부하 구간의 연료비 보전이 가능**하도록 **AASMWP 정산조건 변경**

기 존	개 정
사. 복합발전기의 계통제약 보정정산금 2기 이상의 발전기로 구성된 복합발전기는 계통제약 운전 시 계통제약 보정정산금(AASMWP : Additional Adjusted SMWP)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 즉, 다음의 경우는 $AASMWP_{i,t} = 0$ 이다. 1) $SMF_{i,t} = 1$ 이고 $DAOS_{i,t} > 0$ <신 설> 2) $MEGW_{i,t} > 0$	**사. 복합발전기의 계통제약 보정정산금** 2기 이상의 발전기로 구성된 복합발전기는 계통제약 운전 시 계통제약 보정정산금(AASMWP : Additional Adjusted SMWP)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 즉, 다음의 경우는 $AASMWP_{i,t} = 0$ 이다. 1) $SMF_{i,t} = 1$ 이고 $DAOS_{i,t} > 0$ (단,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의 휴전제약으로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2) $MEGW_{i,t} > 0$

주요 토의내용

□ **회의결과 : 심의보류**

○ ❶제안취지에 부합하는 시간대에만 정산될 수 있도록 개정(안) 문구를 수정하고, ❷해당 시간대에 대한 판단기준을 추가 정리해서 재상정

심의 결과 : 심의보류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김 홍 근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량계용 변성기의 설치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7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전력거래소(시장고객총괄팀)
제안내용	□ **기타전력량계용 변성기의 공용 규정 신설** ○ **(변성기 공용 허용)** 공간 부족 등 현장 여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**타 용도와 공용할 수 있도록 허용** ○ **(변성기 공용 방식)** 변성기 공용 시 **2권선 방식으로 공용 방식 제한** □ **변성기 공용 시의 허용오차 및 단권선 방식의 정격 기준 마련** ○ **(허용오차 준수 원칙)** 변성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도 [별표7] 7.1.5의 허용오차를 준수하도록 명시 ○ **(허용오차 기준)** 공용하는 전력량계 중 **허용오차 기준이 가장 높은 변성기의 허용오차를 기준으로 하며,** 기타 계량설비의 허용오차는 **주 계량설비의 허용오차를 따르도록 함** ○ **(단권선 방식 공용 시 정격부담 초과 금지 원칙)** 공용 2차 권선에 접속된 부하의 합이 변성기의 정격부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 – 단, 별표7 7.1.3 4)의 문구를 아래와 같이 보완함 * (기존) (...)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타 용도와 (...) → (수정) (...)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타 용도의 변성기와 (...)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**김 홍 근**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자가용 전기설비의 총 생산량 계량설비 설치기준에 대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8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주식회사 포스코, 주식회사 LG화학

제안내용

□ **[별표7]에 11.0을 신설**하고 기존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경우 **계기용변성기 외의 계량설비**에 대해서 [별표 7]의 기준을 적용

○ 단, **전력거래 허용한도 준수여부**는 **계기용변성기의 오차등급 및 최대 허용오차를 고려**하도록 함

현 행	규칙개정위원회 상정(안)
[별표7]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절차 <신 설>	**[별표7]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절차** **11.0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설비 기준** 11.1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가 규칙 제4.1.9조 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유지.관리하는 총 생산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와 전력거래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는 본 별표를 따른다. 11.2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가 현장여건상 총 생산량을 계량하기 위한 계기용변성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변성기를 총 생산량을 계량하기 위한 전력량계와 공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별표7의 7.1.5에도 불구하고 최대 1.0급까지 변성기의 오차등급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변성기의 공용 2차 권선에 접속된 부하의 합이 변성기의 정격부담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11.3 11.2에 따라 변성기를 공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총 생산량은 계량값에서 해당 변성기의 최대허용오차를 차감한 값을 적용하며, 전력거래 허용한도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 <이하 11.4, 11.5 개정조문은 생략>

주요 토의내용

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

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김 홍 근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9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전력거래소(시장정산팀)
제안내용	1 **(복수계좌 허용)** 복수의 발전기에 대하여 일부만 단일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 하는 경우에도 복수의 정산계좌 허용 2 **(명의변경)** 현금 재정보증 용도로 개설하는 전력구매자 보증금 계좌의 명의를 회원사에서 전력거래소로 변경 3 **(입금 근거 명확화)** 발전사 입금 소요 발생시 입금시한, 입금계좌 등 발전사 입금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입금 근거 마련 4 **(임의 조정 금지)** 수정정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임의 조정으로 인한 전력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청구일로 공급시기 명문화 5 **(청구요청·정산 명확화)**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기타 정산 요소를 규정에 반영하여 청구요청·정산 근거 명확화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김 홍 근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RPS 고시 개정에 따른 REC 계약단가 적용기준 변경 등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10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전력거래소(신재생시장팀)
제안내용	□ **RPS 고시 개정 사항 반영** ○ 전력거래가격이 음수인 경우 계약단가 적용 기준 정비 ○ 풍력발전 설비의 계약기간 연장 ○ 적용대상 범위 설정 □ **기존 RPS 고시 조항을 규칙에 반영** □ **기타 일부 문구 보완** ○ 자료 제출 및 결과 통지 관련 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개선 ○ 별지 서식의 내용을 규정에 명문화 ○ 별지 서식의 참고 사항 구체화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**김 홍 근**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기차 충전자원의 수요자원시장 참여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11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전력거래소(수요자원시장팀)
제안내용	1 **(국민DR→중소형·제주DR) 상업용 EV충전소는 중소형·제주DR로 자원등록하고** 자가용 EV충전소의 경우 현행 유지 ○ **(EV충전자원 정의)** 중소형·제주DR 중 EV충전소만으로 구성된 수요자원을 **"EV충전자원"으로 정의하여 중소형·제주DR에 참여** 2 **(감축량 산정방식 개선) EV충전자원 전력사용량의 불규칙성을 보완**하기 위해 참여 고객 단위가 아닌 **수요자원 단위로 감축량 평가** ○ **(감축량평가) 참여고객별 → 자원단위** 감축량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여 자원 신뢰성 확보 ○ **(용량기준 완화)** EV충전기의 참여율 제고 및 개별용량을 고려하여 의무감축용량 최소 기준을 **2MW → 1MW로 완화** ○ **(시험) 등록·감축 시험**을 통해 전기차 자원의 **실질적 감축 용량** 파악 ○ **(페널티 적용)** 미이행 제재에 의한 **위약금 부과 및 거래제한 시행**으로 **자원 신뢰성 확보** 3 (**불공정거래 방지**) 감축 참여시 **사용자(EV차주)의 동의 및 충전사업자↔EV차주** 간의 보상 분배 확인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**김 홍 근**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세부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12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전력거래소(선도시장팀)
제안내용	1 **(정의)** "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" **정의 이동 및 추가** 2 **(등록 및 운영)** 전력시장 등록, 계통운영 준수 등 관련 **운영기준 신설** ❶ (입찰) 공급가능용량, 방전가능용량, 소내소비전력량의 시간대별 입찰계획서 신설 ❷ (발전계획) 하루전, 신뢰도 및 제주 전력시장 발전계획에 중앙계약 ESS를 반영하며, 1day 1cycle을 기준으로 발전계획 최적화 3 **(계량 및 정산)** 중앙계약 ESS 계약용량정산금 산식, 수수료 등 **정산기준 신설** ❶ (정산금 계산) 개별 계약가격(원/kW-h)과 발전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(MW), 방전가능용량(MWh)을 바탕으로 급전지시 이행률(%)을 반영하여 산정 ❷ (비용 분담) 전력시장의 시간대별 총 전력거래량 대비 개별 전력구매자의 전력구매량에 따라 산정하여 배분 - 단, '23년 한전과의 계약체결분으로 한전에서 관련 정산금 부담 4 **(기타)** 분쟁조정 대상에 중앙계약시장 포함 및 「별표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절차」 통신설비 설치 대상 명칭을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에서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변경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**김 홍 근** (직인)

조효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제도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13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전력거래소(실시간시장팀)
제안내용	□ **(시장가격 산정) 제주 시범사업에 先적용된 다조합 복합발전기 시장가격 산정규정을 육지 제도시행을 위해 적용하도록 개선** ○ (무부하가격) 조합별 정상운전 구간에 대해서만 무부하결손액을 평균화하여 무부하가격을 산정토록 변경 ○ (결정자격) 최소출력 관련 가격결정자격 부여 시 운전조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변경 □ **(단순 수정) 규칙 변경사항 반영, 누락·오탈자 수정, 용어 설명 보완** ○ (규칙 변경사항) 고정출력발전기 및 하한제약발전기에 대한 기대이익정산금 규칙개정 내용(제23-8차)을 조합별 정산 규정에도 반영 ○ (누락·오타 수정, 용어보완) ❶발전계획상 단시간 운영이 계획된 발전가격 조정절차에서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GT단독모드계획부분 누락사항을 정정, ❷ST 기동비 용어설명 보완, ❸항목 위치 변경 및 중복삭제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**김 홍 근**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정기2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5-정기2-14호
개최일시	2025년 9월 8일 10:30
제 안 자	전력거래소(실시간시장팀)
제안내용	1 **(임밸런스 정산제도 개편) 양방향 임밸런스 체계 도입** 및 **적용대상 범위 확대, 허용오차 수준 개선**을 통한 **제주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** 2 **(용량정산금 지급방식 개선)** 재생e 입찰 참여자원의 **용량정산금 지급 산식 개선** 및 참여자원별 **급전지시 이행성과 기반 차등 신설** 3 **(이행능력시험 프로세스 개선)** 급전지시이행능력시험 **기준 및 절차를 개선**하되, 참여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**합리적 수준으로 조절** 4 **(기타사항) 제주 시범사업 운영업무 관련 문구 및 적용기준 명확화**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5년 9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**김 홍 근** (직인)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

【붙임 2】

일반의결·보고사항 결과

보고 내용	보고 결과
▪ **(제1호)**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변경	원안 접수
▪ **(제2호)** 제25-1차(정기) 규칙개정위원회 결과	원안 접수
▪ **(제3호)**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개선 및 방향설정 워킹그룹 추진현황	원안 접수
▪ **(제4호)** 조합별 비용제도 진행현황	원안 접수

조호정/20250915085024
1104002379175789382